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27

발의연월일 : 2025. 3. 14.

발 의 자 : 이만희・서천호・박충권
엄태영・김기웅・김소희
구자근・이상휘・신동욱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② ~ ⑧ (생 략)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